

第148回 忠州市議會 定例會
2010. 09. 16 (木) 11:00

其他案件審查報告書

-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 원달천마을 공원(쉼터)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總務委員會

其他案件審查報告書

1. 심사경과

안 건 명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2010.08.25	2010.08.25	2010.09.15	2010.09.15	회계과장

2. 제안설명요지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1) 제안이유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원달천마을 공원(쉼터)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사업개요

- 위치 : 충주시 달천동 747-1번지외 1필지
- 면적 : 2,115m²
- 재산가액 : 53,540천원(공시지가기준)

- 매입시기 : 2010년
- 활용계획 : 마을공원 쉼터 조성
- 사업비 : 200백만원(악취관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
 - 기존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중 일부를 시설비로 과목경정

□ 매입대상재산 현황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m ²)	지목	소유자	기준가격 (천원)	비고
계		2,115			53,540	
1	달천동 747-1	869	답	유형선	23,636	
2	달천동 748-3	1,246	답	유형선	29,904	

□ 사업의 필요성

- 악취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의 일환으로 원달천에 주민요구 사항을 수렴한 결과 주민들이 마을공원(쉼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 달천동 747-1번지 일원이 마을에서의 접근성이 좋아 주민이용에 편리하고 마을 및 토지소유자와도 원만한 협의가 가능하여 공원조성 대상지로 적합하다고 사료되고
- 올해 부지를 사전에 매입하여 향후 주민숙원사업(공원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 원달천마을 공원(쉼터)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 본 건은 본방뜰에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음식물처리장 등 환경관련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인근지역 달천동(원달천, 달신), 봉방동(하방), 칠금동(칠지, 금촌, 신대)등 악취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 일환으로

악취피해 주변마을인 달천동 원달천마을 주민들의 마을공원 조성 요구가 있어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중 일부를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임
-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달천동 747-1번지 등 2필지로 총면적 2,115m²로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농지법에는 저촉 사항이 없으며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대상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며 면적이 1,755m²로 소규모이므로 공원관련법에 해당되지 않음
- 본 매입토지는 길이가 약 165m이고 폭이 최소 10m, 최대 17m로 토지활용의 효율성은 낮으나 주민들이 공원조성을 원하고 있는 지역이고 마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주민이 이용하는 데에 편리성이 있어 마을공원조성 후 마을 내 주민 휴식시설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 답변 요지

□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 질의 : 없음

5. 심사결과

□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 원안가결

6. 불임

□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1부. 끝.